



제433회국회(임시회)
제1차보건복지위원회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<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>

■ 강대식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16303호)

2026. 3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신은호

목 차

I . 개요	1
II . 주요 내용별 검토	2
1.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	2

I. 개요

1.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16303호)

가. 제안경위

(1) 제 안 자 : 강대식의원 등 10인

(2) 제 안 일 : 2026. 1. 23.

(3) 회 부 일 : 2026. 1. 26.

나. 제안이유

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, 정신질환자,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).

Ⅱ. 주요 내용별 검토

1.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

가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(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등).

현행	개정안
제11조(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. 다만,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<u>제11조의2</u>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.	제11조(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제11조의2제1항</u> ----- ----- -----.
② ~ ⑧ (생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1조의2(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) (생략)	제11조의2(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② <u>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</u>

나. 검토의견

□ 현행법 제11조¹⁾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, 법 제11조의2²⁾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되고, 자격증 발급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³⁾하도록 하고 있음.

□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이용하거나 해당 개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,

법률상으로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, 특히 자격증 발급 이후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.

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11조(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. 다만,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.

2)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11조의2(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

2의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3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4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

5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)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11조의3(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
2.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
<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방법 >

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	확인기관	확인방법
1. 피성년후견인	법무부 및 법원행정처	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	등록기준지 시·구·읍·면	
2의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		
3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	없음(개인 제출)	개인이 진료 후 진단서 제출 시 확인 가능
4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		
5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		

자료: 보건복지부

□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상대적으로 자기보호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,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□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르면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두도록 하면서,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로 ‘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’를 규정⁴⁾하고 있는데,

4) 「전자정부법」

제37조(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(이하 “공동이용센터”라 한다)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.

제38조(공동이용 행정정보) 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5)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것은 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,

이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관련 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령 상으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- 한편, 개정안은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문언상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누구에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,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또는 이미 취득한 자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⁶⁾

2. 통계정보, 문헌정보,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

3. 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
②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,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행정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대상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③ 행정정보보유기관은 공동으로 이용되는 행정정보가 최신 정보가 되도록 하고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특정한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범위에서 대상정보의 종류, 범위 및 유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5)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11조(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. 다만,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.

6) 유사입법례

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17조의3(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) ① 제공자는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이 제17조의2제2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.

다.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

- (보건복지부)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할 필요성에 동의하나, 결격사유 중 개정 실익이 없는 항목(제4호~제5호)을 제외하고, ‘후견 및 수형 여부’(제1호~제3호)에 대한 요청 규정만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며, 근거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유사 입법⁷⁾과 같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등을 예외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.

아울러, 대상기관 및 제공방법 등은 보유 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고,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(O/X)만을 회신받는 것이 최소 수집 원칙에 부합하므로, 대통령령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는 규정 신설은 불필요함.

- (한국사회복지사협회)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조회 시 고도의 민감 정보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국가자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 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. 다만, 현재 결격사유 조회는 행정 정보 공동이용망을 사용하여 행정 절차상 비약적 변화는 적을 수 있으며, 향후 결격사유 조회 관련 자격관리업무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.

문 의 처

02)6788-5497

7) 「예술인 복지법」

제15조의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(이하 “지원대상 예술인”이라 한다)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의 가족관계·주민등록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소득·재산·출입국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